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2. 법 제3조의2에 따른 안전공제사업의 공제료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
3.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7.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③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u> <u>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u> <u>2. 법 제3조의2에 따른 안전공제사업의 공제료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u> <u>3.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u> <u>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u>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③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1항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